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003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0년 10월 16일
- 회 부 일 : 2020년 10월 26일

2. 제안이유

- 시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을 확대하여 시민감사청구 등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자격인정 대상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제2항제6호).
- 나. 시민감사청구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연서기간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4항).
- 다. 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 라. 직권에 의한 감사 범위를 확대함(안 제24조제1항).
- 마.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확대함(안 제25조).
- 바. 시민의 감사청구서를 정비하면서 시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를 신설함(안 별지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0. 7. 30.~8. 19.)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시민감사 청구 연령요건을 확대하는 등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위원회는 관련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¹⁾」(이하 “공공감사법”)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²⁾」(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지방자치법³⁾」)에 근거하여 시정감시,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 및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위임사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서울특별시장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임.

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채용자격 범위 확대(안 제4조제2항제6호)

- 현행 본 조례에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채용자격 중 공무원 경력, 전문 자격 소지 요건 외에도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조).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 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안 제4조제2항제6호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단체 활동경력 이외에도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활동경력도 채용자격에 포함하여 채용자격 범위를 확대 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종 전	현행 [시행 2019. 9. 26. 전부개정]	개정안
<p>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p> <p>1. ~ 5. (생략)</p> <p>6.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 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p>	<p>제4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p> <p>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채용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p> <p>1. ~ 5. (생략)</p> <p>6. <u>시민사회단체의 장</u>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p> <p>③ (생략)</p>	<p>제4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장</u>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p> <p>③ (현행과 같음)</p>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18조제9항의 별표 9의3 비고)에서는 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가급)인 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위원의 임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한 본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법⁴⁾」 등의 임용자격 기준에 준하여 위원의 자격요건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4)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 참조

- 한편,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채용자격 요건 중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다른 경력경쟁임용 자격요건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다는 지적으로, 2019년 조례 개정시 삭제된바 있음.

【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발취)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요건

-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 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발취) 】

경력경쟁임용시험 임용의 요건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8.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서울시 인사규칙 제18조 (발취)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9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9의4와 같다.

별표 9의3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 인사규칙」(제18조제9항의 별표 9의3)에서 특수 전문 분야 경력자 임용 요건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가급)은 해당 직무분야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법령의 최저 수준의 기준에 맞추어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을 임명하려는 것이 서울시 대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위상에 맞는지와,
-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조사·감사 역량의 정도와 우수한 인사의 영입 가능성 등을 감안한 위원의 적정 직급* 및 자격요건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현행 위원장은 개방형(4급)으로 정원이 마련되어 있으나, 위원은 개방형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정원기준을 감안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최고 가급: 5급상당)로 임명하고 있음(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정원 제외).

※ 개정안의 위원 자격요건인 ‘부서단위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요건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 9의3에서 규정한 최저 기준에 상당하는 수준임.

※ 더불어, 현행 위원회는 4급 상당의 과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그 직위를 위원장에게 수행토록 하고 있는바, 시의회 회기 중 회의나 행정사무감사 등 참석 시 기관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바, 기관으로서의 위원장 직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본 조례 제정 당시 현행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장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규정한 입법취지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직급에 따른 자격요건과의 상충성 여부를 고려하여 자격 요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공공감사법 상 자체감사기구의 장 임용자격 >

구분	감사기구의 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u>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u>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u>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u> 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u>3년 이상 담당한 사람</u> 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u>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시민감사 청구연령 18세로 하향(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공직선거법」 개정(2020.1.14.)으로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⁵⁾됨에 따라 본 조례에 따른 시민감사 청구 연령 제한을 18세로 하향하고(제1항제1호),
 - 시민감사 청구 신청 요건을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며(제1항제1호제가목 신설),

5) 「공직선거법제」 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 외국인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감사 청구 외국인 요건으로 ‘영주권 취득 3년이상 경과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청구 가능하도록 규정⁶⁾한 사항에 준하여,
- 시민감사 청구 외국인 요건을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으로 보완 규정하고(제1항제1호제나목 신설),
- 시민감사 청구를 주민감사와 동일하게 ‘최초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제4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시민의 감사청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 각 호의 기관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감사청구(이하 “시민감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의 감사청구) ① ----- ----- ----- -----.
1.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1.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u> -----
<신 설>	<u>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u>
<신 설>	<u>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u>시민감사청구는 최초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u>

6)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생략)
1.~2. (생략)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본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감사 청구 연령 요건을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규정⁷⁾하고 있는바, 시민감사 제도의 청구 연령을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 연령 개정과 앞서 하향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만,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주민감사청구요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 하향 개정사항에 맞추어 18세 청소년의 감사청구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 시민감사와 주민감사 제도 비교 >

구분	시민감사	주민감사
근거	○ 시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조례 제15조
청구 주체	○ 19세 이상 시민 50인 이상 연서를 받은 대표자 및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시민단체 대표자 ⇒ 시장 ※ 시민단체는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	○ 19세 이상 주민 200인 이상연서 ⇒ 주무부장관 ○ 자치구 조례에 정한 주민 수 : 200명 (도봉 등 6개구 100, 동작 등 7개구 150) ⇒ 시장
청구 대상 기관	○ 우리시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이 행한 사무 중 위법·부당사항 -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 자치구(「지방자치법」 제166조부터 제171조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함)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 시의 위탁사무기관 및 보조금을 수령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사항 - 자치구 및 구청장 사무 ⇒ 시장 - 시 및 시장 권한 사무 ⇒ 주무부장관
제외 사항	○ 시의회에 관한 사항 ○ 소송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개인사생활 침해우려 및 타 기관 기 감사 진행 또는 확정된 사항 ○ 검찰,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중인 사항 ○ 조정 또는 중재절차 진행 또는 확정사항	○ 수사나 재판 관여 사항 ○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 및 타 기관 기 감사 또는 감사 중인 사항 ○ 소송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효력	○ 감사결과 시정	○ 감사결과 시정

7)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라.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연임규정 신설(안 제17조제3항)

- 안 제17조제3항은 감사청구심의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심의회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u>하되</u>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해촉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 심의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심의회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u> ,----- ----- ----- -----.

-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임기 3년에 연임할 수 없고(제4조제6항),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경우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제25조제5항),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해촉 후 1년이 경과 후 재위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심도있는 의결 도출을 위한 위원 연임의 적정 기간에 대하여는 정책적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감사청구심의회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마. 직권감사 대상 확대(안 제24조제1항)

- 현행 조례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공공사업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민감사 또는 주민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감사를 확대 실시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4조(직권에 의한 감사) ① 위원은 <u>고충민원</u>의 조사·처리 및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4조(직권에 의한 감사) ① ----- <u>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 한편, 위원회 직권감사 실적을 살펴보면, 금년에는 9월말 현재 1건에 그치고 있고, 주민감사, 시민감사를 포함하더라도 감사실적이 5건에 그치고 있는바, 위원회의 고유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업무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 내역〉 (단위: 건, '20.9월말)

연도별	합계	완료				진행중	각하 등	비고 (다음연도 이월)
		계	주민감사	시민감사	직권감사 등	직권감사		
2020	8	5	3	1	1	2	1	
2019	23	15	2	8	5	-	4	4
2018	17	8	5	2	1	-	5	4

바.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완화(안 제25조)

- 안 제25조는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을 현행 전문가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제1항), 구성에 있어서 기존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 등 사회적 분포를 반영하며(제2항), 시민참여옴부즈만 추천 기관을 현행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뿐 아니라 주요 직능단체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4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감시 기능을 <u>강화</u>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둘 수 있다.</p> <p>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의 6개 분야 총 35명 이내로 <u>성별</u>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③ (생략)</p> <p>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u>법조계</u>의 추천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p> <p>⑤·⑥ (생략)</p>	<p>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 ----- <u>강화</u> ----- 하고, <u>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u> 위하여 <u>시민참여옴부즈만을</u> ----.</p> <p>② ----- ----- ----- -- <u>성별, 연령</u>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법조계</u> 등----- ----- -----.</p> <p>⑤·⑥ (현행과 같음)</p>

- **현행 시민참여옴부즈만 제도는 최초 「청렴계약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칙」 (2000.9.15.)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본 조례에 따라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서울시정의 청렴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5명이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참여하고 있음.**

<시민참여옴부즈만 제도 개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제도 도입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9.15. : 「청렴계약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칙」 제정 ○ 현재 운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 제도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정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 |
|---|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 역할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전문분야 감사·조사·감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 또는 의견제시, 시정전반의 제도개선 건의

○ 선발 인원 및 임기

- 35명 이내로 구성, 임기 2년에 , 1회 연임 가능
- 분과별 인원

구 분	소 계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환경	도시교통·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
분 야		· 복지정책 · 여성정책 · 취약계층 보호 등	· 시설물 안전 · 재해관리 · 각종공사 · 주택·건축	· 산업정책 · 공원녹지 · 환경기후 · 상 수 도 · 정보통신	· 교통정책 · 운수물류 · 도시계획 · 대중교통	· 아동권리 · 학교지원 · 평생교육 · 문화관광 · 문 화 재	· 법률구제 · 재무회계 · 인사행정 · 내부통제 등
계	35	6	6	6	6	6	5

○ 선발방법

- 조례 제25조 제3항에 의거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등은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조정
- 시민참여옴부즈만 선정은 공개모집과 병행하여 학계, 법조계, 협회, 시민단체 등과 우리시 소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심사 선발

○ 활동 내용

- 입회 분야 : 주 활동 분야로 실·국·본부장, 사업소장,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장이 연초 제출한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입회·감시활동에 인력풀 형태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요청으로 참여
- 공공사업 감사·평가 활동 : 필요시
- 주민(시민, 직권)감사, 고충민원 처리 참여 : 필요시
- 민원배심제 참여 : 필요시

- 한편, 시민참여옴부즈만 개인별 2019년 활동 실적을 보면, 24회 활동 참여자가 있는 반면, 2회만 활동한 옴부즈만(1명)도 있는 등 개인별 활동 실적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대안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실적 건수 비교(2019년) >

연번	성명	성별	계	공공사업		민원 배심제	주민·시민 감사	직권 감사
				입회	감시			
1	권○○	남	11	11				
2	김○○	남	16	16				
3	김○○	여	17	16	1			
4	류○○	남	3	3				
5	박○○	남	16	15	1			
6	박○○	남	11	9	2			
7	박○○	남	13	13				
8	변○○	여	7	7				
9	위○○	여	19	19				
10	유○○	여	2	2				
11	유○○	여	11	11	1			
12	윤○○	남	11	6		2	2	1
13	윤○○	남	21	18	3			
14	이○○	남	6	2			2	2
15	이○○	남	8	8	1			
16	이○○	남	14	12	1			1
17	이○○	남	17	12	5			
18	이○○	남	4	4				
19	이○○	남	9	9				
20	이○○	남	24	23			1	
21	이○○	남	12	12				
22	임○○	남	4	2	1		1	
23	전○○	남	11	11				
24	전○○	남	15	15	1			
25	정○○	남	15	13		2		
26	정○○	남	13	13	1			
27	하○○	남	2	2				
28	정○○	남	2	2				
29	문○○	여	14	13		1		
30	김○○	남	9	8	1			
31	박○○	남	12	11	1			
32	유○○	남	11	9	2			
33	김○○	남	8	7	1			
34	황○○	남	5	3		1	1	
35	김○○	여	23	23				
총계	35명	남28 여7	396	360	23	6	7	4

사. 시민감사청구서 정비 및 청구인 명부 신설(안 별지 서식)

- 안 별지 서식 개정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온라인 자격 증명 시스템을 활용한 시민·주민 감사 온라인 청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기존 연서를 제출받아오던 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성명, 주민번호 입력과 거주지 자격 검증결과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식의 감사청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 청구서 양식을 개정하고, 청구인 명부를 신설하려는 것임.

※ 별지 서식 산구조문대비표 별첨

- 다만, 주민등록시스템 데이터를 기초로 스마트온라인자격증명을 활용하여 청구인 전자서명을 통해 감사청구를 하는 과정에 시스템 간 또는 감사청구 자료 보관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마련에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별첨

별지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지 서식】 시민의 감사청구서		【별지 서식】 시민의 감사청구서·전자서명 등록신청서																	
<table border="1">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시민의 감사청구서</td> <td>처리 기간</td> </tr> <tr> <td colspan="3"></td> <td>없음</td> </tr> </table>		시민의 감사청구서			처리 기간				없음	<table border="1">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시민의 감사청구서 ()</td> <td>처리 기간</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전자서명 등록신청서 ()</td> <td>없음</td> </tr> </table>		시민의 감사청구서 ()			처리 기간	전자서명 등록신청서 ()			없음
시민의 감사청구서			처리 기간																
			없음																
시민의 감사청구서 ()			처리 기간																
전자서명 등록신청서 ()			없음																
1. 청구인	개인	① 청구인 (대표자)	② 대표자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연락처 (전 화)														
	단체	⑤ 단체이름		⑥ 대 표 자															
		⑦ 대표자 생년월일	⑧ 사무소의 소재지		⑨ 사무장 자														
		⑩ 단체설립 목적		⑪ 등록 기관	⑫ 호번 호														
		⑬ 회원의 수		⑭ 연락전화															
				F A X															
	2. 청구동기																		
3. 감사청구사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관련 증빙자료 (있는 경우) 2. 기타(관련 행정기관 또는 소송 등 제기유무) 3.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서류 (개인청구의 경우) : 따로 붙임 <신 설>				수수료															
<신 설>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청구(신청)인	개인	① 청구(신청)인 (대표자)	② 대표자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연락처 (전 화)														
	단체	⑤ 단체이름		⑥ 대 표 자															
		⑦ 대표자 생년월일	⑧ 사무소의 소재지		⑨ 사무장 자														
		⑩ 단체설립 목적		⑪ 등록 기관	⑫ 호번 호														
		⑬ 회원의 수		⑭ 연락전화															
				F A X															
	2. 청구동기																		
3. 감사청구사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관련 증빙자료 (있는 경우) 2. 기타(관련 행정기관 또는 소송 등 제기유무) 3.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청구인명부 (개인청구의 경우) : 따로 붙임 4. 청구인이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청구인명부 확인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해당 외국인에게 별도로 요청합니다. 5. 전자서명 등록신청서 제출 후 전자문서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시민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행

<뒷면>

작성요령

1. 감사청구인

<개인>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 ① **청구인** : 외 명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대표자 이름을 씁니다.
※ 감사청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50명 이상
※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 ③ 주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씁니다.
- ④ 연락처(전화) :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씁니다.

<단체> 개인(50명 이상 연서)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 ⑤ 단체이름 :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공식명칭을 씁니다.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
-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 ⑩ 단체설립 목적 : 정관에 있는 설립목적을 요약하여 씁니다.
- ⑪ ~ ⑫ 주무관청 이름과 허가번호 등을 씁니다.
2. 청구 동기 : 감사를 청구하게 된 동기, 취지, 이유 또는 감사청구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요약하여 씁니다.

3. 감사청구 사항 : 감사청구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되 청구사항이 2건 이상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씁니다.

<신설>

- ※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구비서류>

1. 관련 증빙자료 :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제목을 쓰고 첨부합니다.
2. 기타 :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원의 이름을 쓰거나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을 씁니다.
※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서류** : 개인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등이 있는 원본을 첨부합니다.(전자서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개정안

<뒷면>

작성요령

1. 청구(신청)인

<개인>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 ① **청구(신청)인** : 외 명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대표자 이름을 씁니다.
※ 감사청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50명 이상
※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 ③ 주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씁니다.
- ④ 연락처(전화) :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씁니다.

<단체> 개인(50명 이상 연서)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 ⑤ 단체이름 :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공식명칭을 씁니다.
<삭제>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⑩ 단체설립 목적 : 정관에 있는 설립목적을 요약하여 씁니다.
- ⑪ ~ ⑫ 주무관청 이름과 허가번호 등을 씁니다.
2. 청구 동기 : 감사를 청구하게 된 동기, 취지, 이유 또는 감사청구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요약하여 씁니다.

3. 감사청구 사항 : 감사청구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되 청구사항이 2건 이상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씁니다.

※ **청구인이 전자서로 작성하여 별지 서식을 제출한 날 서명 요청기간은 종료됩니다.**

- ※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구비서류>

1. 관련 증빙자료 :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제목을 쓰고 첨부합니다.
2. 기타 :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원의 이름을 쓰거나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을 씁니다.
※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청구인명부** : 개인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등이 있는 원본을 첨부합니다.(전자서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신 설 >

<뒷면>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생년월일"란에는 청구인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화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화한 날짜를 적습니다.
7.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내외국인 공통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또는 날인)		
외국인의 경우	-고유식별정보인 외국 인등록번호	시민감사	감사종료시 까지
	-성별,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록일자, 등록체류지, 이전의 외국인 등록번호, 변 경 주소, 전화번호, 동거 가족관계(성명, 성별, 생년월일, 외국 인등록번호)	청구 자격 확인	

8.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시민감사 청구 자격 확인
-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서명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명은 유효하지 않습니다.